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1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19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원인자부담금과 체납액의 징수는 현행과 같이 「수도법」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7조제4항 및 제18조를 현행과 같이 함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.

안 제18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·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-----.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(생략) 2.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 구역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	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급수 구역 내에 ----- ----- -----	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----- -----.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부담금의 징수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은 손피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「수도법」 제	제7조(부담금의 징수) ① ~ ④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외수입금	제7조(부담금의 징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의신청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,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16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 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- 1. ~ 10. (생략)

11.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-----

제11조(이의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-----

<삭제>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8조(준용) -----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부담금 -----

제11조(이의신청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
- 1. ~ 10. 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제18조(준용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”를 “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·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급수구역내”를 “급수구역 내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<u>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·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</u> ----- -----.
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제2조	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---

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(생략)
- 2.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

② (생략)

제11조(이의신청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,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16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10. (생략)

11.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급수구역 내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이의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-----

<삭제>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